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612,857,367 | 18,385,721 |
| 일반회계 | 566,765,293 | 17,002,959 |
| 특별회계 | 46,092,074 | 1,382,762 |
| 공기업특별회계 | 38,021,581 | 1,140,647 |
|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| 23,018,908 | 690,567 |
|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| 15,002,673 | 450,080 |
| 기타특별회계 | 8,070,493 | 242,115 |
|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| 1,931,704 | 57,951 |
|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| 1,840,548 | 55,216 |
|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| 1,777,845 | 53,335 |
|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| 2,078,443 | 62,353 |
|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| 441,953 | 13,259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6년 채무부담 행위는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359,26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